



# 우리나라 商標法の 主要

## 商標는 商品 및 企業의 얼굴... 企業

### 다. 出願의 分割

#### ① 意義

商標登錄出願은 하나의 商標에 1個의 商品區分類內의 1個 또는 2個 以上の 商品을 指定하여 出願 하는 것이 原則이나 指定商品區分에 明示되어 있지 아니한 商品에 使用하기 위한 商標를 出願할 때에 “한개의 商標에 둘의 指定商品區分(2個類)에 屬하는 商品으로서 商工部令인 商標法施行規則第10條의 商品區分細目에 明示되어 있지 않은 商品을 2個商品區分(2個類)인 兩區分內에 屬하는 商品을 2個以上 指定하여 잘못 出願하였을 경우에는 同一한 別途商標에다 다른 商品區分에 屬하는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다시 分割出願하면 이를 認定하여 주는 制度이다.

商標法에서는 商標登錄出願이 2 以上の 商品區分內의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出願한 경우에는 査定の 通知를 받은날로부터 30日內에 그 指定商品이 속하는 商品區分별로 이를 分割出願할 수 있다. 다만 商工部令이 定하는 商品區分中에 明示된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商標法第11條의 2)라고 規定하고 있다.

#### ② 出願分割 要件

出願의 分割을 하기 위해서는 ① 2個指定商品區分(2個類)內에 屬하는 商品을 複數로 指定하여 出願하였고 ② 出願人에 있어서 出願과 分割出願人이 同一하여야 하며 ③ 登錄 또는 拒絕査定을 받은날로부터 30日內에 하여야 할 뿐 아니라 ④ 商工部令이 定하는 商品區分中에 明示되지 아니한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出願의 分割은 原出願書에 分割할 商品名을 削除하는 補正書를 提出하고 分割되는 商品은 다시 分割商標登錄出願書를 特許廳에 提出 하여야 한다.

#### ③ 分割의 效果

商標의 分割된 商標出願은 原商標登錄出願時에 한

것으로 出願日을 遡及 認定한다. 이 경우에는 優先權의 主張과 博覽會 出品의 特例適用의 證明提出 期間은 例外로 하고 있어 分割出願에 대한 優先權主張이 可能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出願의 分割은 先願主義의 例外 規定이다.

#### ④ 出願分割의 取扱

① 指定商品을 2 상품구분 이상에 해당하는 商品으로 指定하여 商標登錄을 出願하였을 때에는 거절하며, 그 商品중에 一部商品이 商標法 施行規則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해당 類似商品 세목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商品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商品을 거절사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內에 正當한 商品區分으로 分割登錄出願을 하였을 때에는 그 商品區分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商品일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② 商標登錄分割出願이 있을 때에 出願日字의 적용은 原商標登錄出願時에 出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商標登錄分割出願에 있어서 原登錄出願時에 연합관계에 있던 商標와의 聯合性은 없어진 것이며 分割出願되는 商品區分에 聯合商標가 있을 때에는 聯合商標로 出願하여야 한다.

### 라. 出願의 變更

#### ① 意義

商標登錄出願에 있어서 이미 登錄되었거나 出願中인 獨立商標와 類似한 商標를 獨立商標로 出願하였을 때에 聯合商標로 다시 出願하는 경우 또는 聯合商標로 出願한 商標가 基本商標와 類似하지 아니할 때에 다시 獨立商標로 出願하는 경우로서 “獨立商標의 出願을 聯合商標의 登錄出願으로, 聯合商標의 登錄出願을 獨立商標의 登錄出願”으로 變更하는 制度이다.

商標法에서는 出願者는 聯合商標의 登錄出願을 獨立의 商標登錄出願으로, 獨立의 商標登錄出願을 聯合商標의 登錄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고 이 變更出願은 最初에 한 出願의 査定 또는 審決이 確定된 後에는 할 수

# 内容 解説

## 戰略의 必需品

金 寬 衡  
〈本會 研修部長〉

없으며 變更出願이 있을 때에는 最初에 한 出願은 取下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商標, 서어비스標, 業務標章 또는 團體標章의 登錄出願 相互間에 있어서는 出願變更을 할 수 없다라고 規定되어 있다(商標法第14條).

### ② 出願變更의 要件

出願變更에 있어서 ① 當初의 出願이 無效나 拋棄, 取下 되지 않은 原出願이 存在하여야 하고 ② 出願內容인 商標와 指定商品等의 目的物이 同一性을 갖어야 하며 ③ 原出願人과 變更出願人이 同一人으로서 主體가 同一하여야 할 뿐 아니라 ④ 原出願의 査定 또는 審決이 確定되기 以前에 變更出願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⑤ 商標權의 更新登錄出願과 新規의 商標登錄出願間에는 出願變更을 할 수 없으며 出願變更할 때의 補正과 要旨變更은 獨立商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이와 같이 變更出願을 할 때에는 變更出願書를 다시 特許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 ③ 變更出願의 效果

獨立商標를 聯合商標로 聯合商標를 獨立商標로 出願人이 變更出願을 하였을 때에는 그 變更出願은 最初에 出願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보아 變更出願日을 原出願한 날로 소급 認定하고 있으며 (商標法第14條2項) 先願主義의 例外規定이다.

## 6. 出願의 補正

### (1) 意 義

商標登錄出願을 하면 形式的인 節次에 있어서 方式 審査의 不受理事由에 該當되지 아니한 範圍內에서 書類의 未備事項이나 節次의 補正을 할 수 있게하여 出願의 時急함을 重視해서 事後補完으로 正當한 出願人을 保護하는 制度이다.

이와같은 保正은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이 出願人의 代理權等 人的未備事項과 方式節次의 未備事項 등에 대

### ■ 이달의 目次 ■

- 5. 先願主義
- 6. 出願의 補正
- 7.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

한 補正命令에 의하거나 出願人이 最初의 出願의 要旨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査定 또는 審決이 確定되기 前까지 出願書에 記載된 指定商品 및 出願書에 添附한 商標를 自進補正할 수 있다(商標法 第14條의2).

### (2) 補正方法

#### ① 職權補正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이 職權에 의하여 補正을 命할 수 있는 事項으로서 期間을 定하여 節次의 補正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行爲能力의 欠缺된 出願”으로써 未成年者, 限定治産者 및 禁治産者는 法定代理人에 의하지 아니하면 商標에 關한 節次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違反한 欠缺事項의 補正을 할 수 있는데 未成年者와 限定治産者가 獨立하여 法律行爲를 할 수 있을 때는 補正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代理人의 證明이 없거나, 授權範圍에 欠缺된 出願”으로서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진 者로서 節次를 밟을 것을 委任받은 代理人은 特別한 授權을 얻지 아니하면 商標出願의 變更, 拋棄, 取下, 請求, 申請이나 申請의 取下, 査定不服 抗告審判의 請求 또는 複代理人의 選任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를 違反한 때의 補正을 命할 수 있다. ③ “書式的 節次가 不適法 하거나 手數料가 未納된 경우”로서 商標出願의 節次가 出願書類의 不受理事由(商標法施行規則 第7條)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法令에 定한 方式에 違反하거나 手數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 補正命令에 의하여 補正을 할 수 있다(商標法 第14條의2 第1項).

#### ② 自進補正

商標登錄出願人은 最初出願의 要旨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査定 또는 審決이 確定되기 前까지 出願書에 記載된 指定商品 및 出願書에 添附한 商標를

補正할 수 있다. 이때에 補正할 수 있는 期間은 ㉠ 登錄이나 拒絕査定 및 審決이 確定되기 以前까지 ㉡ 出願公告 決定謄本送達後 拒絕理由에 대한 意見書提出 期間內 ㉢ 異議申請에 대한 答辯書 提出 期間內 ㉣ 査定不服抗告審判請求日로부터 30日內에 限하여 補正을 할 수 있다(商標法 第14條의2 第2項).

### (3) 補正의 範圍

#### ① 商標의 要旨變更

商標登錄出願을 補正할 때에는 要旨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만 可能하며 그 範圍는 다음과 같다.

##### ㉠ 指定商品의 範圍의 減縮

##### ㉡ 誤記의 訂正

##### ㉢ 不明瞭한 記載의 釋明

##### ㉣ 商標의 附記의 部分의 削除

㉢ 外國文字 商標에 있어 그 音의 國文字 併行表示, 다만 併行表示된 文字商標에 있어서 그 어느 하나의 文字를 削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商標法施行令 第3條).

#### ② 指定商品 및 商品區分

指定商品의 補正은 出願人이 出願한 指定商品의 範圍內에서 그 減縮, 誤記의 訂正, 明瞭하지 아니한 部分의 記載에 대한 釋明에 限하여 可能하다 商品區分에 있어서는 出願當初의 商品의 區分과 다른 區分의 指定商品을 變更하는 것은 아니되며 同一區分內에 있어서도 出願當初 指定商品 以外에 商品을 增加하는 補正은 要旨變更이다.

#### ③ 商標

商標의 補正은 要部를 變更하거나 標章을 附記하여 첨가하는 것은 要旨變更이며 要部의 內容이 달라지도록 削除하는 경우도 要旨變更이다. 따라서 附記의 部分의 削除誤記의 訂正, 明瞭하지 아니한 部分의 釋明만이 補正할 수 있으며 外國文字商標의 國文字併行表示의 補正은 要旨變更이 아니다.

### (4) 補正의 效力

商標登錄出願에 있어서 指定期間內에 出願의 要旨를 變更하지 않은 範圍內에서 補正을 하게 되면 欠缺이 補유되며 最初에 한 出願으로부터 補正에 不應하거나 適法한 補正이 아닌 경우에는 그 出願節次는 無效로 한다.

### (5) 補正의 取扱

㉠ 審査官은 特許廳長 명의로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補正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 商標登錄 出願에 대한 節次의 能力이나 法定代理

權 또는 절차행위 등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사항이 있을 때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자로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代理人의 수권에 관한 미비사항이 있을 때

㉢ 商標登錄出願절차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납이 있을 때

㉣ 商標登錄出願人의 보정사항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요지변경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1) 指定商品에 관한 것

㉠ 指定商品의 範圍의 감축 또는 일부삭제는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 오타등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불명료한 記載를 석명하기 위하여 指定商品에 漢文·英文 또는 간략한 설명을 ( )에 표시하거나 첨가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商標에 관한 것

㉠ 商標의 구성중에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이 아니다.

㉡ 商標의 구성중에 부기적인 부분으로서 중요성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 商標의 구성중의 일부분을 삭제함으로써 商標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요지변경으로 본다.

㉣ 商標의 구성중에 指定商品과 일치하는 商品名을 삭제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들면 商標가 “장미검”이고 指定商品이 “검” 일때 商標중 검 부분을 삭제하는 것.

㉤ 外國文字商標에 있어 그 音의 國文字를 병행표시하는 것은 요지변경이 아니다. 다만, 병행표시된 文字商標에 있어서 그 어느 하나의 文字를 삭제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본다.

#### 3) 其他

商品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에 대해서는 보정통지할 수 있다.

#### 4) 商標登錄出願人이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것

㉠ 商標登錄出願에 있어서 登錄이나 拒絕査定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 商標登錄出願 공고결정등본 송달후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또는 異議申請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이 내

## ■ 우리나라 商標法의 主要內容 解説 ■

◎ 거절불복항고 審判請求에 請求日로부터 30일 이내

### 7.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

#### (1) 意義

商標權자가 이미 登錄받은 商標를 當初 登錄時에 指定한 商品 以外の 商品에 사용하고자 할 때와 出願人이 商標登錄出願을 한후에 指定商品을 追加 하고자 할 때에는 登錄商標 또는 原商標登錄出願의 指定商品區分과 同一商品區分內에서 別途로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을 하여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을 받을 수 있다. (商標法 第28條)

#### (2) 追加登錄出願의 要件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는 商標權者와 商標登錄出願을 한 者이어야 하며 追加登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書類를 具備하여 指定商品追加登錄

出願을 하여야 한다(商標法 第28條2項).

① 商標登錄出願人의 姓名이나 名稱 및 住所나 營業所(法人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의 姓名도 記載할 것)

② 商標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境遇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③ 商標 ④ 指定商品 및 그 區分 ⑤ 提出年月日 ⑥ 登錄商標의 登錄番號 또는 商標登錄出願의 番號 ⑦ 追加할 指定商品

#### (3) 審査 및 登錄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 「審査」는 一般商標登錄出願審査와 마찬가지로 出願順位에 따라 審査하며 出願公告를 거쳐 登錄査定에 의하여 登錄하게 된다. 「登錄」에 있어서는 새로운 登錄番號가 부여 되는 것이 아니라 原登錄 또는 原出願에 의한 登錄番號에다 指定商品만 追加되는 것이다(商標法 第28條 3項) <○>

## 本會主要實行業務

### ◎ 9 月의 메모 ◎

- |                     |                     |                            |
|---------------------|---------------------|----------------------------|
| 2日 ◇特許公報 第1208號 發刊  | ◇意匠公報 第556號 發刊      | ◇實用新案公報 第803號 發刊           |
| ◇公開實用公報 第113號 發刊    | ◇公開實用公報 第117號 發刊    | 20日 ◇實用新案公報 第804號 發刊       |
| 4日 ◇特許公報 第1209號 發刊  | ◇公開特許公報 第213號 發刊    | ◇特許公報 第1218號 發刊            |
| ◇商標公報 第312號 發刊      | 13日 ◇特許公報 第1212號 發刊 | 21日 ◇特許公報 第1219號 發刊        |
| ◇公開實用公報 第114號 發刊    | ◇公開特許公報 第214號 發刊    | 22日 ◇特許公報 第1220號 發刊        |
| 6日 ◇實用新案公報 第798號 發刊 | ◇第31回 發明教室          | 23日 ◇特許公報 第1221號 發刊        |
| ◇公開實用公報 第115號 發刊    | 14日 ◇特許公報 第1213號 發刊 | ◇實用新案公報 第805號 發刊           |
| ◇公開特許公報 第211號 發刊    | ◇特許公報 第1214號 發刊     | 24日 ◇特許公報 第1222 ~ 1228號 發刊 |
| 8日 ◇特許公報 第1210號 發刊  | ◇實用新案公報 第801號 發刊    |                            |
| ◇實用新案公報 第799號 發刊    | ◇意匠公報 第557號 發刊      | 25日 ◇特許公報 第1229號 發刊        |
| ◇商標公報 第313號 發刊      | ◇公開特許公報 第215號 發刊    | ◇實用新案公報 第806號 發刊           |
| ◇意匠公報 第555號 發刊      | ◇KIPA 通信 第7號 發刊     | ◇月刊 發明特許 9月號 發刊            |
| ◇公開特許公報 第212號 發刊    | 16日 ◇特許公報 第1215號 發刊 | ◇新素材분야세미나및 간담회             |
| ◇公開實用公報 第116號 發刊    | 17日 ◇特許公報 第1216號 發刊 | 27日 ◇商標公報 第314號 發刊         |
| ◇第64回 工業所有權研修講座     | ◇實用新案公報 第802號 發刊    | 30日 ◇意匠公報 第558號 發刊         |
| 10日 ◇特許公報 第1211號 發刊 | ◇公開特許公報 第216號 發刊    | ◇'86 全國 優秀發明品展示會 審査會議 <○>  |
| ◇實用新案公報 第800號 發刊    | 18日 ◇特許公報 第1217號 發刊 |                            |